

이주현 노무사 「핵심정리 사회보험법」  
제9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4-04-26)

P.36 표 내용 수정

<기준>

취득·상실	신고 노②②	신고기한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	------	---

<수정>

취득·상실	신고 노②②	신고기한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공단에 월 보수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	------	---

P.61 표 내용 수정

<기준>

육아휴직급여액 노①③②	특례	18개월이내 자녀	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or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 포함) (임신 이유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봄)	시작일 ~ 6개월까지 (분할지급×)	월 통상임금 (하한액 70만원. 상한액은 부모 각각 1개월 사용한 경우 200만원 ~ 6개월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달부터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4개월 ~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수정>

육아휴직급여액 노①③②	특례	18개월이내 자녀	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or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 포함) (임신 이유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봄)	시작일 ~ 6개월까지 (분할지급×)	월 통상임금 (하한액 70만원. 상한액은 부모 각각 1개월 사용한 경우 200만원 ~ 6개월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달부터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7개월 ~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P.115 표 내용 추가·수정

<기준>

가입대상 제외자 노①②	타법적용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특례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특례규정 ※ 1988.1.1.기준 45세 이상 60세 미만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가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연금지급(특례노령연금)	

<수정>

가입대상 제외자 노⑩②	타법적용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특례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특례규정 ※ 1988.1.1.기준 45세 이상 60세 미만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가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연금지급(특례노령연금)

P.117 표 내용 수정

<기존>

가입자자격 상실시기 노⑩⑬⑭⑯⑰ - 다음날	임의가입자	사망한 때	의 다음날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or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타 연금법적용,조기노령연금수급권취득 등)	해당하게 된 날
		사망한 때	의 다음날 (단, 탈퇴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 상실)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임의계속가입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수정>

가입자자격 상실시기 노⑩⑬⑭⑯⑰ - 다음날	임의가입자	사망한 때	의 다음날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or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타 연금법적용,조기노령연금수급권취득 등)	해당하게 된 날
		사망한 때	의 다음날 (단, 탈퇴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 상실)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임의계속가입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P.156**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급여의 제한 (체납자에 대한 지급제한)	원칙 <sup>노19</sup>	1개월 이상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or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때까지 그 <b>가입자 및 피부양자</b> 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수정〉

급여의 제한 (체납자에 대한 지급제한)	원칙 <sup>노19</sup>	1개월 이상 보험료( <b>보수 외</b> 소득월액보험료or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때까지 그 <b>가입자 및 피부양자</b> 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

**P.158** 표 내용 수정

〈기존〉

부당이득의 징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or준요양기관or보조기관매업자or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b>금액의 전부or일부를</b> 징수한다.
-------------	----	--

〈수정〉

부당이득의 징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or준요양기관or보조기관매업자or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b>금액을</b> 징수한다.
-------------	----	--

**P.161**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월별보험료액	직장가입자 <sup>노5</sup> <sup>17</sup> <sup>19</sup>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sup>노19</sup>	세대단위로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수정〉

월별보험료액	직장가입자 <sup>노5</sup> <sup>17</sup> <sup>19</sup>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b>보수외</b> 소득월액보험료	<b>보수외</b> 소득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sup>노19</sup>	세대단위로 산정	
		<b>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b> <b>+</b> <b>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b>	

P.162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소득월액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으로 산정	
보험료율 노②	원칙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1만분의 709(령§44)
	국의 업무종사자	50% 경감
보험료부과점수 노⑧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정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8.4원(령§4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정>

소득월액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으로 산정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보험료율 노②	직장가입자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1만분의 709(령§44) ⇒ 국외업무 종사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의 50%로 함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8.4원(령§44)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노⑧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①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or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제외 => 주택에 대한 부과점수 산정시 제의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가 신용정보, 대출금액등의 금융정보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P.162**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면제	내용	직장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보험료 면제 지역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
	기간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 급여정지 사유가 1일에 없어진 경우 및 가입자or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하지 않음

〈수정〉

면제	내용	직장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보험료 면제 지역가입자가 면제사유 해당시 그 가입자의 <b>소득월액 및 재산</b>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
	기간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 급여정지 사유가 1일에 없어진 경우 및 가입자or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b>소득월액 및 재산</b>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하지 않음

**P.163**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부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노 <sup>⑤</sup> ①⑧⑱⑳	직장가입자가 100% 부담
납부의무 노 <sup>⑤</sup> ①⑦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기한 노 <sup>⑤</sup> ⑳	다음달 10일까지(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 가능) 납입고지의 송달지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수정〉

부담	직장가입자의 <b>보수외</b> 소득월액보험료 노 <sup>⑤</sup> ①⑧⑱⑳	직장가입자가 100% 부담
납부의무 노 <sup>⑤</sup> ①⑦	직장가입자의 <b>보수외</b>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기한 노 <sup>⑤</sup> ⑳	다음달 10일까지( <b>보수 외</b>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 가능) 납입고지의 송달지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P.165**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자료제공	원칙	자료제공	공단은 보험료징수or공익목적 위해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or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체납등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 가능
		자료제공 대상자	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연체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자료제공 제외 (령§47)	① 체납된 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or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② 체납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③ 체납자가 재해or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or사업이 현저하게 손실되거나 중대위기에 처했을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수정〉

자료제공	원칙	자료제공	공단은 <b>보험료징수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b> or공익목적 위해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or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체납등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 가능
		자료제공 대상자	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연체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자료제공 제외 (령§47)	① 체납된 보험료 <b>나 부당이득금</b>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or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② 체납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③ 체납자가 재해or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or사업이 현저하게 손실되거나 중대위기에 처했을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b>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b>	

**P.169**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금융정보등의 제공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고,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함
-----------	--

〈수정〉

금융정보등의 제공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b>재산</b>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고,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함
-----------	--

**P.170 표 내용 추가·수정**

〈기존〉

업무정지	기간	그 요양기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수정〉

업무정지	기간	그 요양기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	----	--

**P.190 OX문제 내용 추가·수정**

〈기존〉

041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천분의 14이다. ( )

〈수정〉

041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이다. ( )

**P.207 192번 문제 삭제**

19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P.285 29번 해설 수정**

〈기존〉

29 다만,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수급자격 외에 추가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

〈수정〉

29 다만,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수급자격 외에 추가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

P.313 86번 해설, 답 수정

<기존>

86 ② 위촉위원(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의 임기는 2년,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고위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로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고보령 §1의4)

정답 > 85 ② 86 ② 87 ⑤

<수정>

86 ① 위촉위원(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의 임기는 2년,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고위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로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고보령 §1의4)

정답 > 85 ② 86 ① 87 ⑤

P.332 150번 문제 수정

<기존>

150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수정>

150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P.364 34번 문제 정답 수정

<기존>

정답 > 33 ④ 34 ①, ②

<수정>

정답 > 33 ④ 34 ②



P.392 92번 문제 정답 및 해설 수정

<기존>

- 92 ㄱ. 곱한 금액 ⇒ 합한 금액 (산재법 별표3)
- ㄴ. 100분의 45 ⇒ 100분의 47 (산재법 별표3)

정답 > 91 ㉓ 92 ㉑

<수정>

- 92 ㄱ. 곱한 금액 ⇒ 합한 금액 (산재법 별표3)
- ㄷ. 100분의 45 ⇒ 100분의 47 (산재법 별표3)

정답 > 91 ㉓ 92 ㉒

P.411 4번 문제 해설 수정

<기존>

- 04 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적용제외자이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연금법 §8, §9).
- ㉔ 국민연금가입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므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한다(연금법 §12, §13).

<수정>

- 04 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적용제외자이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연금법 §8, §9).
- ㉔ 국민연금가입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므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한다(연금법 §12, §13).

P.462 90번 문제 해설 수정

<기존>

- 090 (×)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응하여야 한다.

<수정>

- 090 (×)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홍보하여야 한다.

P.489 48번, 49번 문제 정답수정

<기존>

정답 > 46 ㉔ 47 ㉑

<수정>

정답 > 48 ㉕ 49 ㉕